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6년 08월 06일

화산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고 *자	고 *자 1939-12-14	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효행로414번길 (안녕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7-21
이 *진	이 *진 1984-10-30	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안녕북길 (안녕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7-21
이 *진	김 *홍 1986-05-10	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안녕북길 (안녕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7-21